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6
----------	-----

2023년 7월 3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고광민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고광민 의원)

##### 1. 제안이유

-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라.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III.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고광민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826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 사회,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목적

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이하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11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 그리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조례에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지정·운영 및 해지, 종합계획, 위원회 구성, 재정지원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왔습니다.
- 그러나 혁신교육지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 유지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형태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이하 ‘미래교육지구’)사업을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표-1]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청(25개구)	합계
2019	12,500,000 (자치구당 5억)	12,500,000 (자치구당 5억)	14,513,835 (자치구당 5억 이상)	39,513,835
2020	12,500,000 (자치구당 5억)	12,500,000 (자치구당 5억)	14,697,835 (자치구당 5억 이상)	39,697,835
2021	12,500,000 (자치구당 5억)	12,500,000 (자치구당 5억)	15,131,701 (자치구당 5억 이상)	40,131,701
2022	12,500,000 (자치구당 5억)	6,500,000 (자치구당 2억6천)	15,773,242 (자치구당 5억 이상)	34,773,242
2023	13,718,382 (기정예산 10,540,832 2차 추경안 3,177,550)		14,020,557(예정)	27,738,939

○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미래교육지구로 재구조화되었고, 동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sup>1)</sup>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sup>2)</sup>은 종전의 혁신교육지구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미래교육지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개정조례안은 총 12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와 지정 및 운영,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구성체계는 관련 지침<sup>3)</sup>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바, 전

1)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지정 현황 (25개 자치구 전부 신청 및 지정 완료)

-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계획(2022.12.13.)  
-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계획 및 신청 안내(2022.12.28.)  
-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 알림(2023.02.13.)  
-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공동협약식 및 출범식(2023.05.11.)  
-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별 개별협약식 진행중(2023.05.11. ~ )

2) 대체로 기존의 자치법규와 신 자치법규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제도 그 자체가 신규 양 자치법규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폐지·제정방식을 취한다.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354쪽

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미<sup>4)</sup>가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안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에게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본래의 목적과 교육의 중립성(「교육기본법」 제6조)<sup>5)</sup>을 준수하도록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마을 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참여시키는 것을 기조로 출발하였으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구성원이 자칫 편향된 사고와 정치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교육의 특성상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교육은 헌법<sup>6)</sup>과 법률에 따라 내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정치화는 금지되어야 하는바,

동 규정이 교육감에게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록 선언적 의미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4)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99쪽 참조

5)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6) 「헌법」제31조 ①~③ (생략)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미래교육지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그리고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범위는 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sup>7)</sup>에 따른 중점과제와 동일한 바, 이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의 세부추진과제를 포괄하는 추진 목적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5조는 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 조례가 기존의 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9조)

- 안 제7조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동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는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 이에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미래교육지구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안)’,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023.4.

특히 안 같은 조 제4호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지구를 함께 운영하는 교육장과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협력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규정을 보완한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하고, 정기회는 연 2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종전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35명보다 위원회 규모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위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3명의 공동위원장을 부교육감 1명으로 축소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조례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미래교육지구로의 재구조화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6.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미래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 2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미래교육지구운영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
2. 미래교육지구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지정·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기획조정실장 및 담당 부서의 장

2. 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자치구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외협력)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